1.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

/ 신고 기간 : 2012. 1. 1. ~ 2. 29. /

/ 신고 기준일 : 2011. 12. 31. /

/ 신고사항 /

■ 2011. 1. 1. ~ 2011. 12. 31.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또는 최초(재등록 포함) 신고일 ~ 2011. 12. 31.까지의 재산변동사항

- 등록의무자의 친족사항
  -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, 관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
- 신고기준일('11. 12. 31.) 현재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
  ※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 및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은 제외
  -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· 지상권 및 전세권
  - 광업권 · 어업권,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
  -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(수표 포함), 주식·국채·공채·회사채 등 증권, 채권 및 채무
  -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(금제품 및 금제품 포함)
  -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, 골동품 및 예술품
  -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
  -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

/ 신고방법 /

■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(http://peti.go.kr)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· 제출

/ 주요일정 /

■ 고지거부 허가 신청 : '12. 1. 1. ~ 1. 30.
※ 고지거부 허가 심사결과 통보 : 10일 이내(~ '12. 2. 9.)

■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: '12. 1. 1. ~ 2. 29.
※ (신청대상) '09년 최초신고(재등록 포함) 시 또는 '1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

■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(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) : '12. 1. 15.

■ 금융정보 사전 제공(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) : '12. 1. 20.
※ 금융정보 제공 및 검증 실시 : '12. 1. 15. ~ 1. 19.

■ 신고서 제출 마감 : '12. 2. 29. 24:00

■ 신고서 수정 : '12. 3. 1. ~ 3. 10.
※ 신고기간 내에는 수시 수정이 가능하며, 신고기간 만료 후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정 가능(수정요청 · 승인 필요)

2.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요

/ 공직자 재산등록(법 제1조) /

「공직자 재산등록」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,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

/ 재산등록의무자(법 제3조, 영 제3조) /

-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
- 4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
- 법관 및 검사,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
- 교육공무원 중 총장 · 부총장 · 대학원장 · 학장, 전문대학의 장 및 대학의 처장 · 실장, 시 · 도교육감 · 교육장
- 경사(자치경사) 이상 경찰공무원 및 소방장(지방소방장) 이상 소방공무원
- 감사원 · 국세청 · 관세청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
- 조세징수 · 건축 · 토목 · 환경 · 식품위생분야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
- 공기업의 장 · 부기관장 · 상임이사 · 상임감사, 공직유관단체의 임원
-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임직원,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임직원
- 국방부 · 방위사업청 소속 군사시설, 방위력 개선 등 업무 담당부서 5급 일반직 · 별정직, 중령 및 3급 군무원 등

/ 재산등록 종류 및 등록시기 /

종 류	등록시기 및 신고기간
최 초 재산등록	• 임용 · 승진 ·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 •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 · 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
정기재산 변동신고	• 재산등록의무자는 신고기준일(전년도 12. 31.) 현재의 재산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
의무면제 신 고	• 등록의무자가 전보 · 강임 · 강등으로 등록의무가 면제된 경우 전보 · 강임 · 강등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(총 2회 신고)
퇴직신고	•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
재 등 록 신 고	• 전보 · 강임 · 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이 3년(퇴직한 경우 1년)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

3. 재산등록 신고절차 및 방법

/ 재산등록(신고) 시 사전 준비사항 /

- **컴퓨터 환경** :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
- **인증서 준비** :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(금융기관 등에서 발급)
  ※ 컴퓨터 및 행정전자서명인증서 관련 문의처 : 소속기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
- **재산변동신고에 필요한 참고서류**
  - 신고 시 각종 증비서류의 제출은 생략되나, 윤리업무담당자가 재산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

/ 재산등록의무자(법 제3조, 영 제3조) /

- 인터넷 가동
- www.peti.go.kr 접속
- 로그인 클릭
- 보안프로그램 설치(처음 접속시)
- 인증서 선택
- 인증서 등록(처음 접속시)
- 로그인

/ 재산등록(신고)을 위한 사전 확인사항 /

- **고지거부 허가 신청 및 심사결과 확인**
  - [고지거부신청등] → [고지거부신청] 메뉴에서 확인
  - '11년도 고지거부 재심사결과 확인 : 불허자 중 요건충족시 1. 30.까지 허가신청
  - **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** : 허가는 1. 30.까지 신청, 재심사는 2. 29.까지 신청
    ※ PETI에서 고지거부 신청 시 원본과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(미첨부시 소속기관 제출)
  - 고지거부 불허 시 통보받은 날부터 불허된 친족의 재산을 연장기간 내 신고
    ※ 연장기간 : 공개자 20일, 비공개자 30일
- **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현황 확인(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)**
  - [고지거부신청등] → [정보제공동의] 메뉴에서 확인
  -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(친족 포함)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조회자료를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에만 제공
- **제출신고서 내역 확인**
  - [신고서조회] → [제출신고서조회] 메뉴에서 확인

/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하기 /

- 재산등록신고 "작성하기" 클릭

* 화면에서 신고서 제출 기한과 신고서 작성상태 확인 가능

개정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**등록의무자의 자택주소 등 7개 항목**은 **'도로명 주소'로 입력**
- 다만, 소유권 등 확인을 위해 토지 · 건물 소재지는 '지번'으로 입력
  * 등록의무자의 집 및 직장 주소, '친족'의 주소, '회원권'의 소재지, '사인간채권'의 채무자 주소, '사인간채무'의 채권자 주소, 출자지분이 있는 '합명 · 합자 · 유한회사'의 소재지, 출연재산이 있는 '비영리법인'의 소재지

① **신상명세서** : **소속, 직급, 자택 · 직장주소, 연락처** 등 신상정보 입력 후 저장

② **친족관리** :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을 추가 · 삭제, **부모가 사망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**
※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은 등록제외

③ **총괄표**

- 재무제표 형식으로 종전에 신고한 가액이 종전가액으로 변경됨
- 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 신고서 내역을 조회 ([재산등록신고서조회] → [제출신고서조회])하여 참고 후 신고서 작성

- **토지** : 소유권, 지상권, 분양권, 사실상 소유권 등 신고(**토지 위에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** 토지항목에 입력하지 않고 **건물항목에 입력**)
  - 지번별로 나누어 신고("○○번지 외 ○필지"와 같이 합산신고하면 안됨)
  - **가액(개별공시지가 × 소유면적)** :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(http://www.realtypr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
  - 등기부등본 상 사망한 부모의 소유인 경우 **상속되는 지분만큼 사실상 소유권으로 신고**하고 비고란에 사유 기재
  - 도로, 하천 등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가액은 '0'으로 표시하고, 비고란에 공시지가 없음으로 기재

- **건물** : 소유권, 전세권, 분양권, 사실상 소유권 등 신고
  - **부부가 공동소유**하고 있는 경우 **부부 모두 해당 지분만큼 각각 신고**
  - 타인소유 건물을 임차한 경우 '전세권(임차권)'으로 건물항목에 신고
  - 분양권은 등기 전이라도 신고하고, 등기한 경우 소유권으로 전환 신고

☞ **부동산정보제공**에 **동의**한 경우, **부동산정보열람**을 클릭하여 출력한 후 직접 입력하거나 **부동산정보활용입력**을 클릭하여 입력 가능(1. 15. 이후 제공)

- **자동차**
  - 신규로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가액란에 입력
  - 기 신고하여 계속 보유 중인 경우 **자동차 보험기준가액**, 시가표준액, 전문가 평가액 순으로 가액을 확인하여 변동신고

☞ **자동차 할부 잔액**의 경우 **채무항목**에 **신고**

- **예금(보험·펀드 등 포함)** : **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**의 예금·보험에 대해 계좌별로 모두 신고(통장별 1천만원 미만이 아님)
  -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, 적금, 보험(순수보장성 보험 제외), 간접금융상품(펀드, MMF, CMA, ELS 등), 양도성 예금증서, 예탁금, 각종 공제회·상조회 불입금 등 그 명칭을 불문

☞ **금융거래정보제공**에 **동의**한 경우, **금융정보열람**을 클릭하여 출력한 후 직접 입력하거나 **금융정보활용입력**을 클릭하여 입력 가능(1. 20. 이후 제공)

- **증권** : 소유자별 주식·국채·공채·회사채 등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류별로 모두 신고(합산신고 불가)
  - 주식 : 상장주식(평가가액), 비상장주식(액면가액)

☞ 증권회사의 융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한 경우 주식과 채무(융자금)로 각각 신고

※ 펀드 등 수익증권은 예금항목에 신고

공개대상자는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주식 평가액이 **3천만원을 초과**할 경우 **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, 직무관련성 심사청구** 중 한가지 조치를 취해야 함

- **채무·채무** : 채권 또는 채무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이면 신고
  -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**임대**하고 받은 **전세·임대보증금**은 **채무항목에 신고**
  - 타인의 주택·점포 등을 **임차**한 경우 **보증금**은 채권항목이 아닌 건물항목에 전세권(임차권)으로 신고
  - 사인간 채권·채무는 채권·채무자와의 관계, 사용처, 자금출처 등 기재

- **금·보석류·골동품** : 금은 소유자별 500만원 이상, 보석류·골동품은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
  - 금(백금)은 시가를 변동신고하고, 보석·골동품은 당초 신고가격 유지
- **회원권** : 골프·헬스·콘도미니엄 등은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
  -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항목에 신고

※ 회원권란에 분양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면적을 기재

  -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

④ **변동요약서**

- 총괄표에서 등록한 재산을 **실거래액(없을 시 가액) 기준으로 합산**하여 현금흐름표 방식(자금의 유입과 지출)으로 자동생성하여 줌
- 변동사유 : 소득대비 재산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
- 소득대비 재산증감이 큰 경우,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지 신고서 재확인

☞ 매매한 부동산, 사인간 채권·채무, 분양권, 전세권, 소득금액 등 누락·과다 확인

- 소득 : 본인 및 친족의 **재산변동기간 동안의 소득 기재**(세전금액)

⑤ **공개목록**(공개대상자인 경우에 해당)

☞ 공개목록은 신고서 제출 후 관보에 게시되므로, 반드시 재산신고금액, 재산증감 변동사유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·수정하여야 함

- 총괄표에서 등록한 재산은 재무제표 형식의 공개목록으로 자동 생성됨
- 신고기간 종료 후 1월 이내 관보에 공개

※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3월말 관보(공보) 게재 예정

⑥ **신고서 제출**

- 신고서 출력 : 본인 보관용 신고서 출력
- 신고서 제출 :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됨

☞ 고지거부를 허가한 친족사항과 재산신고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신고서 제출 불가

/ 제출신고서 수정 방법 /

○ 제출신고서 내용조회 : [신고서 조회] → [제출신고서 조회]
○ 제출한 신고서 수정방법

① **신고서 제출기간 내 수정방법**

- 상시 수정이 가능하며 [재산등록신고] → [수정하기]를 클릭하여 수정

② **신고서 제출기간 만료 후 수정방법**

- **신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**하며,
- [재산신고] → [신고서수정] 메뉴에서 신고서 수정요청을 확인
  - **윤리업무담당자 승인 후 수정가능**

4.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

※ 재산등록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별 세부 기재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에 작성

■ **재산등록(신고) 기준일**

- **재산등록(신고) 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**하여야 함
  - ＊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: 2011. 12. 31.
  - ☞ 등록기준일과 등록일(전산입력 제출일)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

■ **재산등록대상범위**

- 본인, 배우자 및 고지거부 하지 않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·동산 등 전 재산을 등록
  - ☞ 고지거부 대상자이더라도 **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재산등록**
-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**사실상 소유 재산**과 외국에 있는 재산 및 사실상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**등록대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의 신고**
  - ＊ 문중재산, 친목회·동창회비 등 재산 누락 주의

■ **예금·보험**

- 금융재산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
-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 외에 모두 신고

현금·예금·증권·채권 및 채무의 경우 소유자별 합계액이 1,000만원 미만이라고 자의적 판단에 따른 미신고로 신고누락한 예금·증권 등을 포함 **소유자별 합계액이 1,000만원 이상이 되어 보완조치 이상 처분**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신고

■ **채무**

-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(금융채무·임대채무·사인간 채무 포함)
-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(임대)보증금은 반드시 채무로 신고
- 마이너스 통장·자동차 할부금·연금공단 채무·보험약관 채무·주식대출 등

■ **기타**

- 재산증감 시 변동사유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·사용처를 빠짐없이 변동사유란에 기재
- 금융기관이 같더라도 계좌별로 각각 신고하고, 동일지역이라도 지번별로 각각 신고
- 전세(임차)권은 건물항목에 신고
- 신고금액은 모두 천원 단위로 기재
- 부동산, 예금, 증권, 채무, 채권 등 소멸 시 소유권 상실·해약란에 체크(V)
- 전세권은 건물항목에 신고, 부동산 매매의 경우 가액과 실거래가액 모두 기재

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 재산등록관련 문의안내

- 행정전자서명발급 : 해당 소속부처 정보화담당부서
- 부동산종합정보포털 : http://onnara.go.kr
-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: www.realtyprice.or.kr
- PETI 접속 및 시스템 사용문의 : (Help Desk) 02-2100-3333
- 재산등록·심사 등 관련 문의 : 행정안전부(윤리담당관실) – 재산등록·심사(4629, 3348, 3353, 3356, 3357), 재산공개(3358), 고지거부(4627), 시스템 운영(3359, 3366)
- 기타 상세한 사항 : www.peti.go.kr 게시판 참조

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.

PETI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

2012년도

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

2012. 1.

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

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